「금오테니스장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## 2. 제안이유

가. 금오테니스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, 지역 테니스 저변 확대 및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**가. 사 무 명**: 금오테니스장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

**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**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2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

3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

4)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22조 및 제22조의 2

5) 「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제19조

6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

**다. 위탁 사무 내용**: 금오테니스장 관리 운영 전반

**라. 위탁시설**

1) 시 설 명: 금오테니스장

2) 소 재 지: 구미시 산책길 105(남통동 414-61)

3) 규　　모: 부지면적 24,966㎡, 연면적 4,997㎡(지하 1층, 지상 2층)

4) 주요시설: 테니스장 15면(실내 4면, 실외 11면) 및 부대시설 등

| 구 분 | 주 요 시 설 | 비 고 |
|---|---|---|
| 실내테니스장 | 실내테니스장 4면, 운영실 및 부대시설 | 관람석(476석) |
| 센터코트 | 테니스장 1면, 방송실 및 부대시설 | 관람석(1,235석) |
| 서브코트 | 실외테니스장 10면 | 관람석(630석) |
| 부속동 | 대기실, 화장실, 샤워실 | 지상1층 |
| 기타시설 | 휴게마당, 파고라 등 | |

**마. 위탁기간**: 2027. 1. 1. ~ 2031. 12. 31.(5년)

**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**: 675,162천원(2027년)

**사. 수탁자 선정방식**: 성과평가 및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계약

**아. 적정성 검토결과**: 적정　※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(2026. 8. 19.)

**자. 위탁구분**: 재계약 (수탁기관: 구미도시공사)

## 4. 부서의견

가. 금오테니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관리·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성과 편익증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나. 구미도시공사는 14년간 금오테니스장을 관리·운영해 온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, 이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테니스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·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2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

3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

4)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22조 및 제22조의 2

5) 「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」 제4조

6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

나. 예산조치: 2027년도 예산편성

다. 성과평가 결과 및 감사결과

## 6. 검토의견

**○ 본 동의안은**

- 금오테니스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기관인 구미도시공사와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**○ 검토 결과,**

- 현 수탁기관인 구미도시공사는 테니스장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, 성과평가 및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도 운영능력이 확인되어 전문적인 시설 관리와 지역 테니스 활성화를 위한 재계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2025년 이용인원이 전년대비 감소한 점을 고려하여 강습 및 시설 이용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,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시설 이용 활성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